

2023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439
----------	------

2023년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3. 10. 16
2. 제안자 : 서울특별시장
3. 회부일자 : 2023. 10. 23
4. 상정일자 : 제32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2023. 12. 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2023. 12. 4)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2023. 12.14)
 - 원안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기획조정실장)

- 의안번호 제1443호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등 6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동일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엄지운)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1439호, **2023년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3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

2.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

1) 제안이유

-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 심의에 따라, 자원회수시설 지역주민 난방비 지원 사업비 및 자원회수시설 지역주민 주거환경개선, 주민복지증진 사업비를 증액하고, 정책사업비인 예치금을 당초 대비 20% 초과 감액하여,
- 나. 비용자성 사업비(효율적인 폐기물처리)를 31,001백만원, 예치금을 7,822백만원으로 최종 변경하고자 함.

다. 지출계획 변경내용

(단위: 백만원)

< 지출 부문 >						
구 분		당 초 (A)	1차 변경	2차 변경 (B)	증 감 (C=B-A)	증감률 (C/A*100)
계		39,824	41,377	38,823	△1,001	△2.5%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비용자성 사업비	27,143	31,001	31,001	3,858	14.2%
	예치금	12,681	10,376	7,822	△4,859	△38.3%

※ 최종 의회 의결액(당초, 제315회 정례회)대비 정책사업비(재무활동-예치금) 20% 초과(38.3%) 변경

<1차 변경>

- 자원회수시설 지역주민 난방비 증액(당초 6,463백만원→8,561백만원)
-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지원 증액(당초 768백만원→798백만원)
- 자원회수시설 지역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증액
(당초 10,036백만원→10,536백만원)
- 자원회수시설 지역주민 주민복지증진사업 증액
(당초 9,876백만원→11,107백만원)
- 예치금 감액(당초 12,681백만원→10,376백만원)

<2차 변경>

- 정책사업비인 예치금 감액(당초 12,681백만원→7,822백만원)

3.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출계획의 정책사업중 **일반예산(재무활동)**을 당초계획 대비 △48억 5,900만원¹⁾ 감액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²⁾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의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³⁾에는 지출계획중 예치금 항목만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도 재무활동의 20%를 초과하는 변경에 해당되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출계획중 정책사업인 **일반예산(재무활동)**을 당초 지출계획보다 △38.3%, △48억 5,900만원을 감액하여 변경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됨

1)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지출계획 변경

- 1차 변경('23 8. 8) :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38억 5,800만원), 일반예산(재무활동)(△23억 500만원)
- ※ 「지방기금법」 제11조 단서규정(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따라 의회의결 없이 자체변경
- 2차 변경(금번 변경안) : 일반예산(재무활동)(△25억 5,400만원)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의 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3)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22. 7), p.296

〈표 3-1〉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단위 : 백만원, %)

정책 사업 / 단위 사업 / 세부 사업	당 초 (A)	1 차	2 차 (B)	증 감 (C=B-A)	증 감 륜 (D=C/A)
지 출 합 계	39,824	41,377	38,823	△1,001	△2.5
효 율 적 인 폐 기 물 처 리	27,143	31,001	31,001	3,858	14.2
일 반 예 산 (재 무 활 동)	12,681	10,376	7,822	△4,859	△38.3
보 전 지 출	12,681	10,376	7,822	△4,859	△38.3
여 유 자 금 예 치	12,681	10,376	7,822	△4,859	△38.3

※ 자료근거 : ①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중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지출계획
②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23.10.16) 재구성

○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사실상 '22회계연도 결산결과를 '23회계연도 종료전 반영하려는 것으로, '22회계연도 수입계획 보다 실제 수납이 적어 부족 재원이 발생한 것으로4) 예치금 결산결과 부족 재원이 발생한 것은 당초 계획보다 실제 지출 즉, 여유재원 적립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5)

- 그럼에도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는 '22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지출 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사안임에도 결산에 대한 언급이 없고 수입계획 또한 누락하여 제출 하는 등 기금의 지출계획만 단순히 변경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어 의안심사에 혼선이 초래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23. 7), p.12
-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 지역주민지원 기금 수입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수 입 계 획 액	전 년 도	수 입 계 획	징 정 수	실 제	수 납 륜
당 초 수 정 이 월 액	현 액	액	액	수 납 액	수 납 륜
(A)	(B)	(C = A + B)	(D)	(E)	(E / C)
37,872	-	37,486	34,341	34,339	91.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23. 7), p.20
-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 지역주민지원 기금 예치금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기 금 운 용 계 획	지 출 계 획 현 액	지 출 액	
당 초 수 정	(A)	(B)	(A - B)
9,186	9,363	6,809	2,554

〈표 3-2〉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

수입부문	당초 (A)	1 차	2 차 (B)	증 감 (C=B-A)	증 감 륜 (D=C/A)
수입합계	39,824	41,377	38,823	△1,001	△2.5
공공예금이자수입	176	229 ¹⁾	229	53	30.1
예치금회수	9,363	9,363	6,809	△2,554	27.3
기타회계전입금	30,186	31,686 ²⁾	31,686	1,500	5.0
예탁금이자수입	99	99	99	-	-

※ 자료근거 : ①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중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지출계획
 ②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수입계획)
 ③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과-4627('23.11. 1)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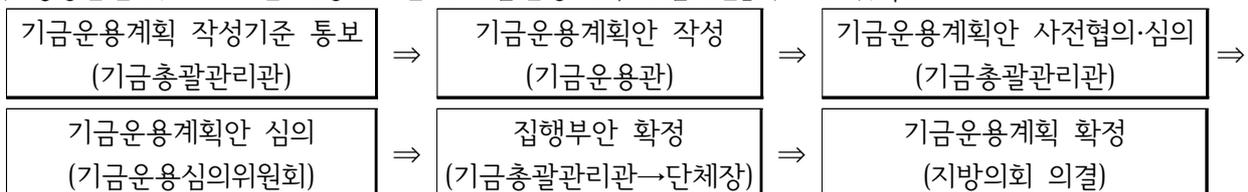
주1)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액(5,300만원), 주2) 기타회계전입금 증액(15억원)

○ 아울러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훈령인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사전에 받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⁶⁾,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한⁷⁾ 다음에서야 사후적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사후에 개최한 것으로 확인되어⁸⁾ 행정안전부의 훈령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더욱이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금번 정례회에 같이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이는 의회의 기금심사를 형식적인 절차로만 인식하는 사례가 될 수 있어 추후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6)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2. 7), p.293



7) 의안번호 : 1439, 「2023년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제출일 : '23.10.16)

8)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과-4309('23. 10. 23)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협의회 개최 결과 보고”
 기금운용협의회 일시 : 양천('23.10.17), 마포('23.10.17), 노원('23.10.18), 강남('23.10.18)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생략」

VI. 부대의결 : 「생략」

VII. 심사결과 : 원안 가결(2023.12.15.)

2023년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 번호	1439
----------	------

제출년월일 : 2023년 10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 심의에 따라, 자원회수시설 지역주민 난방비 지원 사업비 및 자원회수시설 지역주민 주거환경개선, 주민복지증진 사업비를 증액하고, 정책사업비인 예치금을 당초 대비 20% 초과 감액하여,

나. 비용자성 사업비(효율적인 폐기물처리)를 31,001백만원, 예치금을 7,822백만원으로 최종 변경하고자 함.

다. 지출계획 변경내용

(단위: 백만원)

< 지출 부문 >						
구 분		당 초 (A)	1차 변경	2차 변경 (B)	증 감 (C=B-A)	증감률 (C/A*100)
계		39,824	41,377	38,823	△1,001	△2.5%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비용자성 사업비	27,143	31,001	31,001	3,858	14.2%
	예치금	12,681	10,376	7,822	△4,859	△38.3%

※ 최종 의회 의결액(당초, 제315회 정례회)대비 정책사업비(재무활동-예치금) 20% 초과(38.3%) 변경

<1차 변경>

- 자원회수시설 지역주민 난방비 증액(당초 6,463백만원→8,561백만원)
-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지원 증액(당초 768백만원→798백만원)
- 자원회수시설 지역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증액
(당초 10,036백만원→10,536백만원)
- 자원회수시설 지역주민 주민복지증진사업 증액
(당초 9,876백만원→11,107백만원)
- 예치금 감액(당초 12,681백만원→10,376백만원)

<2차 변경>

- 정책사업비인 예치금 감액(당초 12,681백만원→7,822백만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자원회수시설과 자원회수시설현대화팀 복혜진(☎ 2133-3682)